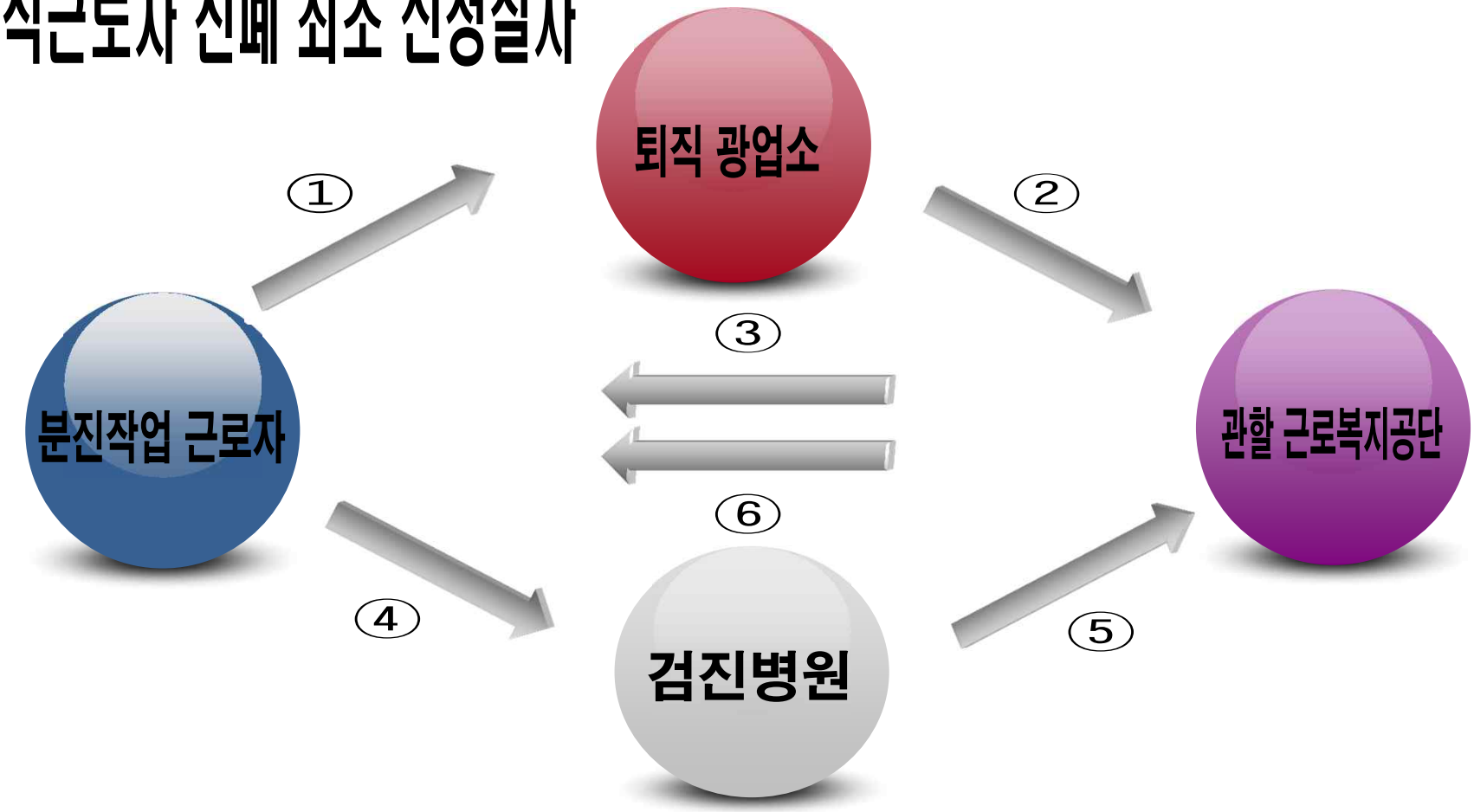
퇴직근로자 진폐 최초 신청절차



<1985. 3. 31 이전 퇴직자>

① 진폐 요양신청서 작성(의사소견서 첨부)
② 사업주 확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송부
③ 검진 실시 통보
④ 진폐정밀검진 실시
⑤ 검진결과 통보
⑥ 판정결과 통보

<1985. 3. 31 이후 퇴직자>

①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작성
② 사업주 확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송부
③ 검진 실시 통보
④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
⑤ 검진결과 통보
⑥ 판정결과 통보